

검 토 보 고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동 조례안은 1998년 10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수를 파주시정원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가.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안제4조1항)
- 나. 전문위원은 일반 사무에 대해서만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안제4조3항)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안을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정원조례에,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5875호)의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